

## 연구윤리 규정 (한국생체재료학회)

2008 년 6 월 28 일

#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생체재료학회(이하 '학회') 회원이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논문의 투고, 발표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대상)

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학회회원과 그 저작물 및 논문에 포함된 연구개발 활동과 직 .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### 제 3 조 (적용범위)

학회를 통해 투고,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된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조(연구윤리위원회)

-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(이하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부회장, 전무이사, 학회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5 조(위원회의 운영)

-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-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그 결정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6 조 (위반행위)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.

1. 날조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
2. 위조: 연구와 관련된 재료, 장비,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,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
3. 표절: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, 연구과정, 결과, 말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
4. 삭제: 원하는 결과 도출에 장애가 되는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
5. 자기기만: 연구자들이 편향된 사고나 예단에 의해 충분한 검증없이 무의식적으로 실험데이터 수집에 주관을 개입시키는 행위
6. 중복투고: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,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
7. 논문분할: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
8.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: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9. 타인에게 상기 각호의 1 의 위반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.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10. 본인 또는 타인의 상기 각호의 1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
제 7 조 (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)

- ①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,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,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연구의 실험대상이 동물인 경우,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고, 그 실험과정이 당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에 관한 원칙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의 윤리위원회나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위반행위 제재조치)

- ① 본 규정이나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지에 2 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.
- ②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영구히 금지하며, 본 학회회원이 재차 위반한 경우는 영구 제명한다.
- ③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9 조 (기타)

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